

공

고

●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14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25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주식회사 더**, 조*훈, 최*형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(☎ 02-6735-8131/ FAX 02-6735-8144 / E-mail : oasis79@korea.kr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주식회사 더**	120111-0932***	인천광역시 계양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7,500,000	1577-***33	대리운전
2	조*훈	890830-*****	서울특별시 관악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7,500,000	010-****-2478	주식
3	최*형	901025-*****	서울특별시 금천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30,000,000	010-****-1025	광고대행